



2021년 개정된 의료법규 자료집

9월 개정 / 2022년 1월 시행 반영



M E D I C I N E L A W

Contents

• 의료법	3
• 보건의료기본법	7
• 지역보건법	1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
• 검역법	25
• 혈액관리법	44
• 국민건강보험법	47

의료법

<p>제21조(기록 열람 등)</p> <p>①·② (생략)</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17. (생략)</p> <p><신설></p> <p>④·⑤ (생략)</p>	<p>제21조(기록 열람 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17. (현행과 같음)</p> <p>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p> <p>[개정 : 2020.12.29, 시행 : 2021.6.30]</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p> <p>①~④ (생략)</p> <p>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p> <p>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개정 : 2020.12.29, 시행 : 2021.6.30]</p>
<p><신설></p>	<p>제33조의3(실태조사)</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 2020.12.29, 시행 : 2021.6.30]</p>
<p>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p> <p>①·② (생략)</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p> <p>[개정 : 2020.12.29, 시행 : 2021.6.30]</p>

<p><신 설></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신설 : 2020.12.29, 시행 : 2021.6.30]</p>
<p>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p> <p>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20.12.29, 시행 : 2021.6.30]</p>
<p>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p> <p>① (생 략)</p> <p>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⑭ (생 략)</p>	<p>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의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개정 : 2019.4.23, 시행 : 2021.12.30]</p> <p>③~⑭ (현행과 같음)</p>
<p>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p>	<p>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p>

<p>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p> <p>1. (생략)</p> <p><신설></p> <p>2.~4의2. (생략)</p> <p><신설></p> <p>5.~9. (생략)</p> <p>②·③ (생략)</p>	<p>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p> <p>2.~4의2. (현행과 같음)</p> <p>4의3.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때</p> <p>[개정 : 2020.12.29, 시행 : 2021.6.30]</p> <p>5.~9.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p> <p>1.~6. (생략)</p> <p><신설></p>	<p>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p> <p>1.~6. (현행과 같음)</p> <p>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p> <p>[개정 : 2020.12.29, 시행 : 2021.6.30]</p>
<p>제66조(자격정지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p> <p>1.~4. (생략)</p> <p>5.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p> <p>6.~10. (생략)</p> <p>②~⑥ (생략)</p>	<p>제66조(자격정지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p> <p>1.~4. (현행과 같음)</p> <p><삭제></p> <p>[개정 : 2020.12.29, 시행 : 2021.6.30]</p> <p>6.~10. (현행과 같음)</p> <p>②~⑥ (현행과 같음)</p>
<p>제85조(수수료)</p> <p>① 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② (생략)</p>	<p>제85조(수수료)</p> <p>① 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개정 : 2020.12.29, 시행 : 2021.6.30]</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2조(과태료)</p> <p>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제92조(과태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1. (생 략)

2.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8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신 설>

3.~8. (생 략)

④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8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 2020.12.29, 시행 : 2021.6.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신설 : 2020.12.29, 시행 : 2021.6.30]

3.~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보건의료기본법

<p>제21조(위원회의 구성)</p> <p>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 신설></p> <p>1. (생략)</p> <p>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p> <p>3.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p> <p>4. (생략)</p> <p>④·⑤ (생략)</p>	<p>제21조(위원회의 구성)</p> <p>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과 제3호에 따른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p> <p>3.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p> <p>[개정 : 2021.3.23, 시행 : 2021.3.23]</p> <p>4.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	---

국민건강증진법

<p>제2조(정의)</p> <p>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p> <p>2.~3. (생략)</p> <p>4.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p> <p><신설></p> <p><신설></p>	<p>제2조(정의)</p> <p>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p> <p>2.~3. (현행과 같음)</p> <p>4.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p> <p>5.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p> <p>6. “건강친화제도”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p> <p>[개정 : 2019.12.3, 시행 : 2021.12.4]</p>
<p>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개정 : 2019.12.3, 시행 : 2021.12.4]</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p> <p>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 2019.12.3, 시행 : 2021.12.4]</p>
<p><신설></p>	<p>제6조의3(인증의 유효기간)</p> <p>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 2019.12.3, 시행 : 2021.12.4]</p>

<p><신 설></p>	<p>제6조의4(인증의 취소)</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 2019.12.3, 시행 : 2021.12.4]</p>
<p>제7조(광고의 금지 등)</p> <p>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p> <p>2.~3. (생 략)</p> <p>③·④ (생 략)</p>	<p>제7조(광고의 금지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삭 제></p> <p>[개정 : 2020.12.29, 시행 : 2021.6.30]</p> <p>2.~3.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p> <p>①~③ (생 략)</p> <p>④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p> <p>⑤·⑥ (생 략)</p>	<p>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p> <p>[개정 : 2020.12.29, 시행 : 2021.1.1]</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p> <p>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신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p>3.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p> <p>4.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다만, 경고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p> <p>5.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주류 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할 것</p> <p>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 2020.12.29, 시행 : 2021.6.30]</p>
<p><신 설></p>	<p>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 관리)</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2. 주류의 광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3. 알코올 남용·의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음주폐해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 2020.12.29, 시행 : 2021.6.30]</p>
<p><신 설></p>	<p>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p> <p>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 2020.12.29, 시행 : 2021.6.30]</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제조자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조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p> <p>[개정 : 2021.7.27, 시행 : 2021.8.1]</p>
<p>제23조의2(부담금의 납부담보)</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등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등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세관장에게 담배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23조의2(부담금의 납부담보)</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세관장에게 담배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개정 : 2021.7.27, 시행 : 2021.8.1]</p>
<p>제25조(기금의 사용 등)</p> <p>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p> <p>1.~6. (생략)</p> <p>7. 구강건강관리사업</p> <p>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 사업</p> <p>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p> <p>10.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p> <p>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p> <p><신설></p> <p>②·③ (생략)</p>	<p>제25조(기금의 사용 등)</p> <p>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p> <p>1.~6. (현행과 같음)</p> <p>7. 신체활동장려사업</p> <p>8. 구강건강관리사업</p> <p>9.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 사업</p> <p>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p> <p>11.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p> <p>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p> <p>[개정 : 2019.12.3, 시행 : 2021.12.4]</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1조의2(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p> <p>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p>	<p>제31조의2(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등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p>

<p>3.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p> <p><신 설></p> <p>5.·6. (생략)</p>	<p>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p> <p>4.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p> <p>[개정 : 2020.12.29, 시행 : 2021.6.30]</p> <p>5.·6. (현행과 같음)</p>
<p>제34조(과태료)</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p> <p><신 설></p> <p><신 설></p> <p>② (생략)</p> <p>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신 설></p> <p><신 설></p> <p>④·⑤ (생략)</p>	<p>제34조(과태료)</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p> <p>1의2.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p> <p>1의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p> <p>[개정 : 2019.12.3, 시행 : 2021.12.4]</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p> <p>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p> <p>[개정 : 2020.12.29, 시행 : 2021.6.30]</p> <p>④·⑤ (현행과 같음)</p>

지역보건법

<p>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른다.</p>	<p>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른다. [개정 : 2021.1.12, 시행 : 2022.1.13]</p>
<p>제21조(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기간 등을 계획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21조(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하여 평가한 서비스대상자와 그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서비스 제공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기간 등을 계획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p> <p>[개정 및 신설 : 2021.7.27, 시행 : 2022.1.1]</p>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p>제20조(기금의 조성)</p> <p>① (생략)</p> <p>②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p> <p>1.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같은 법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것에 한한다)</p> <p>2. (생략)</p>	<p>제20조(기금의 조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p> <p>1.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같은 법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것에 한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12.22, 시행 : 2021.1.1]</p>
<p>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p> <p>①~③ (생략)</p> <p><신설></p>	<p>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p> <p>[개정 : 2021.3.23, 시행 : 2021.9.24]</p>
<p>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p>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응급구조사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p> <p>[개정 : 2020.12.29, 시행 : 2021.12.30]</p>
<p><신설></p>	<p>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p> <p>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할 수 없다.</p> <p>[본조신설 : 2021.3.23, 시행 : 2021.9.24]</p>
<p>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p> <p>①·② (생략)</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의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의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개정 : 2020.12.22, 시행 : 2021.1.1]</p>

<p>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p> <p>①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 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 등이 속한 기관·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후단 신설></p> <p>② (생 략)</p> <p>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구급차등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장비의 장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p> <p>④ (생 략)</p>	<p>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p> <p>①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 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구급의약품의 적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필요한 조치, 구급차등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장비의 장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1.3.23, 시행 : 2021.9.24]</p>
<p><신 설></p>	<p>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p>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 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 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 2020.12.29, 시행 : 2021.12.30]</p>
<p>제60조(벌칙)</p> <p>①~③ (생 략)</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2. (생 략)</p> <p>3.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 용한 자</p> <p><신 설></p>	<p>제60조(벌칙)</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 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자</p> <p>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 용한 자</p> <p>[개정 및 신설 : 2021.3.23, 시행 : 2021.9.24]</p>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제2조(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0.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0. (현행과 같음)</p> <p>21. “의료·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p> <p>[개정 : 2020.12.15, 시행 : 2021.6.16]</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p>① (생략)</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p> <p>1.~7. (생략)</p> <p>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p> <p><신설></p> <p>9. (생략)</p> <p>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p> <p>11.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p> <p>12.~17. (생략)</p> <p>③·④ (생략)</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p> <p>1.~7. (현행과 같음)</p> <p>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p> <p>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p> <p>9. (현행과 같음)</p> <p>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p> <p>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p> <p>12.~17.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12.15, 시행 : 2021.6.16]</p>
<p>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p> <p>① (생략)</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2. (생략)</p> <p>2의2.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3. ~ 3의2. (생략)</p> <p>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p> <p>5.·6. (생략)</p> <p>③~⑤ (생략)</p>	<p>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2의2. 감염병 대비 의료·방역 물품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개정 : 2021.3.9, 시행 : 2021.6.16]</p> <p>3.~3의2. (현행과 같음)</p> <p>4. 감염병 통계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p> <p>[개정 : 2021.3.9, 시행 : 2021.3.9]</p> <p>5.·6. (현행과 같음)</p> <p>③~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p> <p>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5. (생략)</p> <p>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p> <p>6의2.~7. (생략)</p>	<p>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5. (현행과 같음)</p> <p>6.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p> <p>6의2.~7.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1.3.9, 시행 : 2021.3.9]</p>

<p>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p> <p>8의2. 제40조의2에 따른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p> <p><신 설></p> <p>9.~11. (생 략)</p>	<p>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치료 의료·방역 물품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p> <p>8의2. 제40조의2에 따른 의료·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p> <p>[개정 : 2021.3.9, 시행 : 2021.6.16]</p> <p>8의3. 제40조의6에 따른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p> <p>[개정 : 2021.3.9, 시행 : 2021.3.9]</p> <p>9.~11. (현행과 같음)</p>
<p>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p> <p><신 설></p> <p>②·③ (생 략)</p>	<p>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p> <p>3.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p> <p>②·③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12.15, 시행 : 2021.6.16]</p>
<p>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관 및 실시기준 등)</p> <p>① (생 략)</p> <p>②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관 및 실시기준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21.3.9, 시행 : 2021.3.9]</p>
<p>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p> <p>① (생 략)</p> <p>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3. (생 략)</p> <p>4. 의료용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p> <p>5. (생 략)</p> <p>5의2. 감염병 발생 및 전파상황에 따른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대응방안</p> <p>6. (생 략)</p> <p>③·④ (생 략)</p>	<p>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p>4.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p> <p>[개정 : 2020.12.15, 시행 : 2021.6.16]</p> <p>5. (현행과 같음)</p> <p>5의2.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전파상황별 대응방안</p> <p>[개정 : 2021.3.9, 시행 : 2021.9.10]</p> <p>6.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p> <p>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p> <p>②~⑤ (생략)</p>	<p>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p> <p>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p> <p>[개정 : 2021.3.9, 시행 : 2021.3.9]</p> <p>②~⑤ (현행과 같음)</p>
<p>제39조의3(접촉자 격리시설 지정)</p> <p>① 시·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접촉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p> <p>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촉자 격리시설만으로 접촉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39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p> <p>① 시·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p> <p>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만으로 감염병의심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20.12.15, 시행 : 2021.6.16]</p>
<p>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p> <p>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p> <p>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치료 의료·방역 물품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p> <p>[개정 : 2020.12.15, 시행 : 2021.6.16]</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40조의2(감염병 대비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p> <p>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하거나 생산한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p>	<p>제40조의2(감염병 대비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p> <p>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하거나 생산한 의료·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p> <p>[개정 : 2020.12.15, 시행 : 2021.6.16]</p>

<p>제40조의3(수출금지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의약외품등”이라 한다)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약외품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40조의3(수출금지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방역 물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p> <p>[개정 : 2020.12.15, 시행 : 2021.6.16]</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약품 및 장비 등의 비축)</p> <p>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을 비축·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4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p> <p>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료·방역 물품을 비축·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개정 : 2020.12.15, 시행 : 2021.6.16]</p>
<p><신설></p>	<p>제40조의6(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p> <p>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하여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p> <p>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p> <p>[개정 : 2021.3.9, 시행 : 2021.3.9]</p>
<p>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p> <p>①·② (생략)</p> <p>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p>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p>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신 설></p>	<p>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p>⑥ 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p> <p>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및 신설 : 2021.3.9, 시행 : 2021.3.9]</p>
<p>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p>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p>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개정 : 2020.12.15, 시행 : 2021.6.16]</p> <p>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21.3.9, 시행 : 2021.9.10]</p>
<p><신 설></p>	<p>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p> <p>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무선·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p>

	<p>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를 결정한다.</p> <p>[본조신설 : 2020.12.15, 시행 : 2021.6.16]</p>
<p>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p> <p>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p> <p>1.~3. (생략)</p> <p>3의2. 제39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p> <p>4.~9. (생략)</p>	<p>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p> <p>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p>3의2. 제39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의 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p> <p>4.~9.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12.15, 시행 : 2021.6.16]</p>
<p>제67조(국고 부담 경비)</p> <p>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p> <p>1.~7. (생략)</p> <p>7의2. 제39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p> <p>8.~10. (생략)</p>	<p>제67조(국고 부담 경비)</p> <p>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p> <p>1.~7. (현행과 같음)</p> <p>7의2. 제39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p> <p>[개정 : 2020.12.15, 시행 : 2021.6.16]</p> <p>8.~10. (현행과 같음)</p>
<p>제70조(손실보상)</p>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1의2.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p> <p>2.~5. (생략)</p> <p>②~④ (생략)</p>	<p>제70조(손실보상)</p>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p> <p>[개정 : 2020.12.15, 시행 : 2021.6.16]</p> <p>2.~5. (현행과 같음)</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70조의3(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p> <p>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70조의3(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p> <p>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12.15, 시행 : 2021.6.16]</p>
<p><신설></p>	<p>제72조의2(손해배상청구권)</p> <p>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p> <p>[본조신설 : 2021.3.9, 시행 : 2021.3.9]</p>

<p>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p> <p>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감염병관리시설, 제37조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p> <p>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감염병관리시설, 제37조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12.15, 시행 : 2021.6.16]</p>
<p>제75조(청문)</p> <p>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75조(청문)</p> <p>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9조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 명령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명령 <p>[개정 : 2021.3.9, 시행 : 2021.3.9]</p>
<p>제77조(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생략) 3.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외품등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자 	<p>제77조(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현행과 같음) 3.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방역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자 <p>[개정 : 2020.12.15, 시행 : 2021.6.16]</p>
<p>제79조(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의2. (생략)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5. (생략) 	<p>제79조(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p>[신설 : 2021.3.9, 시행 : 2021.3.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5. (현행과 같음)
<p>제81조(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8. (생략)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9.~11. (생략) 	<p>제81조(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8. (현행과 같음) 8의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p>[신설 : 2021.3.9, 시행 : 2021.3.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9.~11. (현행과 같음)
<p><신 설></p>	<p>제81조의2(형의 가중처벌)</p> <p>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제79조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② 제79조의3 각 호의 죄를 범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 2021.3.9, 시행 : 2021.3.9]

검역법

<p>제2조(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가.~사. (생 략)</p> <p>아. 가목에서 사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변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p> <p><신 설></p> <p>2. (생 략)</p> <p><신 설></p> <p>3.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p> <p>4. (생 략)</p> <p>5. “검역감염병 의심자”란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노출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p> <p>6.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험한 감염성 물질을 전달하는 쥐나 위생해충을 말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2조(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가.~사. (현행과 같음)</p> <p>아. 에볼라바이러스병</p> <p>자. 가목에서 아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변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p> <p>2. (현행과 같음)</p> <p>2의2. “운송수단의 장”이란 운송수단을 운행·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조종의 책임자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를 말한다.</p> <p>3.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p> <p>4. (현행과 같음)</p> <p>5. “검역감염병 접촉자”란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p> <p>6.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험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7.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p> <p>8.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1.3.5]</p>
<p>제3조(책무)</p> <p>①·② (생 략)</p> <p>③ 국민은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제3조(국가의 책무)</p> <p>①·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개정 : 2020.3.4, 시행 : 2021.3.5]</p>

<p><신 설></p>	<p>제3조의2(국민의 권리와 의무)</p> <p>① 국민은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p> <p>② 국민은 검역감염병으로 격리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p> <p>③ 국민은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 2020.3.4, 시행 : 2021.3.5]</p>
<p><신 설></p>	<p>제4조의2(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p> <p>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한 검역 분야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역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검역 사업계획과 추진방법 3. 검역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4. 제30조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교육과 역량강화 방안 5. 그 밖에 검역관리에 필요한 사항 <p>③ 검역소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④ 질병관리청장과 검역소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본조신설 : 2020.3.4, 시행 : 2021.3.5]</p>
<p>제5조의2(오염인근지역의 관리)</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하 “오염인근지역”이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자에 대하여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발열 여부를 검사하는 등 검역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의 범위 및 오염인근지역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삭 제></p> <p>[개정 : 2020.3.4, 시행 : 2021.3.5]</p>
<p>제6조(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p>	<p>제6조(검역조사의 대상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단서 삭제></p>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생략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
2.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호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료나 자재 및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이하 “출입국자”라 한다), 운송수단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
2.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호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반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운송수단(출입국자 및 화물을 포함한다)**
2. 연료나 자재 및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군용(軍用) 운송수단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송수단(이 경우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의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운송수단**

[개정 : 2020.3.4, 시행 : 2021.3.5]

제7조(군용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검역소장은 **군용(軍用)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면 검역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擬似患者)가 없다는 사실**
2. **운송수단 안에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

<삭 제>

[개정 : 2020.3.4, 시행 : 2021.3.5]

제8조(피난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① **운송수단을 운행 또는 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 또는 조종의 책임자(이하 “운송수단의 장”이라 한다)는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장소와 가장 가까운 검역구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

<삭 제>

[개정 : 2020.3.4, 시행 : 2021.3.5]

<p>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p>	
<p>제9조(검역 통보)</p> <p>운송수단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나포(拿捕), 귀순 및 조난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이 통보할 수 있다.</p>	<p>제9조(검역 통보)</p> <p>① 제6조에 따른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장소와 가장 가까운 검역구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나포(拿捕), 귀순 및 조난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이 통보할 수 있다.</p> <p>④ 운송수단의 장 또는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검역소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1.3.5]</p>
<p>제10조(검역 장소)</p> <p>① (생략)</p> <p>② 검역을 받으려는 운송수단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은 노란색 기(旗)를 달거나 노란색 전조등을 켜는 등 검역 표시를 한 후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p> <p>③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p> <p>④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이하 “검역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검역 조사를 받아야 한다.</p>	<p>제10조(검역 장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검역을 받으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포, 귀순, 조난 및 응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2.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p><삭 제></p> <p>[개정 : 2020.3.4, 시행 : 2021.3.5]</p>

제11조(검역 시각)

- ① 검역소장은 날씨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가 뜬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하여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고, 해가 진 후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도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선박 안에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2. 선박의 화물을 긴급하게 하역(荷役)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② 검역소장은 선박을 제외한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들어오는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며,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구역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2조(검역조사)

- ①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2호 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송수단**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2. 승객, 승무원 및 육로로 걸어서 출입하려는 사람(이하 “도보출입자”라 한다)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및 화물의 실린 상태**
 4. (생략)
- ② **도보출입자**는 출입하기 전에 검역구역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의 장,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도보출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11조(검역 시각)

<삭제>

- ② 검역소장은 제6조에 따른 검역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 장소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다.

[개정 : 2020.3.4, 시행 : 2021.3.5]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검역조사)

- ①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2호 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2.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4. (현행과 같음)
- ②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는 출입하기 전에 검역구역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 조사를 받아야 한다.
-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조사**할 수 있다.
- ④ 검역소장은 검역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및 신설 : 2020.3.4, 시행 : 2021.3.5]

<신 설>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검역관 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1.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
 - 2.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항만 및 육로의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여행지역과 시기에 관한 정보의 요구
 - 2. 검역감염병 관련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의 요구
 - 3.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요구
 - 4.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
 - 5.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④ 검역감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는 경우,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2020.3.4, 시행 : 2021.3.5]

<신 설>

제12조의3(항공기 검역조사)

- ① 항공기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서류 심사에 의한 검역조사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p>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 2020.3.4, 시행 : 2021.3.5]</p>
<p><신 설></p>	<p>제12조의4(선박 검역조사)</p> <p>① 선박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선박에 노란색 기(旗)를 달거나 노란색 전조등을 켜는 등 검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② 검역소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에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해운대리점의 대표자로 하여금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 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서류 심사에 의한 검역조사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⑤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사실 확인 및 보건위생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선박을 선정하여 검역조사 이후에 보건위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 2020.3.4, 시행 : 2021.3.5]</p>
<p><신 설></p>	<p>제12조의5(육로 검역조사)</p> <p>①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p> <p>② 질병관리청장은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역통보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 2020.3.4, 시행 : 2021.3.5]</p>
<p>제13조(검역 전의 승선·탑승)</p> <p>①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운송수단에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제30조에 따른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선하거나 탑승할 수 없다. 다만, 미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p>	<p>제13조(검역 전의 승선·탑승)</p> <p>①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운송수단에 검역조사가 완료되어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제30조에 따른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선하거나 탑승할 수 없다. 다만, 미리 보</p>

<p>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아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이 검역감염병 증상이 있거나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접촉한 경우 즉시 검역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검역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한 자에 대해 즉시 검역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검역조사의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및 신설 : 2020.3.4, 시행 : 2021.3.5]</p>
<p>제14조(전자 검역)</p> <p>①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 전산으로 검역을 신청한 경우 신청받은 운송수단과 관련한 검역 정보를 확인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도착과 동시에 검역 절차가 끝났음을 알리고 검역증을 내 줄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전산으로 접수된 운송수단의 검역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자 검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전자 검역)</p> <p><삭 제></p> <p>[개정 : 2020.3.4, 시행 : 2021.3.5]</p>
<p>제15조(검역 조치)</p> <p>①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를 격리시키는 것 2. 검역감염병 의심자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p>3.·4. (생략)</p>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검사하기 위하여 해부하는 것 	<p>제15조(검역 조치)</p> <p>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2.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하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라 한다)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p>3.·4. (현행과 같음)</p> <p>4의2.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p> <p><삭 제></p>

6.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7.·8. (생략)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시체를 해부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같은 호 각 목에 규정된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를 말한다. 이하 “연고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국외 또는 섬, 벽지(僻地) 등에 있거나 사는 곳을 알지 못할 때
2. 그 밖의 사유로 연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없을 때
3. 연고자의 승낙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해부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해당 검역소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회항(回航)하거나 다른 검역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치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6.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7.·8. (현행과 같음)

<삭제>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해당 검역소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치를 할 때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 2020.3.4, 시행 : 2021.3.5]

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① 검역소장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한다. <단서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隔離病棟)
- 2.~4. (생략)
- 3.·4. (생략)

<신설>

②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많이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격리병동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한다. 다만,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시설
- 2.~4. (현행과 같음)
- 3.·4. (현행과 같음)
5.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많이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격리병동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p>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이송을 포함한다)를 할 때에 필요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한다.</p> <p>⑤ (생략)</p> <p>⑥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 수용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격리 사실을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이송을 포함한다)를 할 때에 필요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하고, 격리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격리 사실을 격리 대상자 및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1.3.5]</p>
--	---

<p>제17조(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등)</p> <p>① 검역소장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의심자가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검역감염병 의심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도록 요청하거나 검역감염병 의심자를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에 격리시킬 수 있다.</p> <p>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하는 동안 검역감염병 의심자가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콜레라 : 5일 2. 페스트 : 6일 3. 황열 : 6일 4.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 10일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0일 6. 제2조제1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감염병 : 그 최대 잠복기 	<p>제17조(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p> <p>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하는 동안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p> <p>[개정 : 2020.3.4, 시행 : 2021.3.5]</p>
--	---

<p>제18조(격리시설 등에서 화물 반출의 금지)</p> <p>제16조에 따른 격리병동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화물은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1.3.5]</p>	<p>제18조(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p> <p>제16조에 따른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은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1.3.5]</p>
---	---

<p>제19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p> <p>①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승객, 승무원 및 도보출입자,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p>	<p>제19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p> <p>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승객, 승무원 및 도보출입자, 검역감염병 병원체</p>
---	--

<p>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이하 이 조에서 “오염운송수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감염병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물건의 폐기 등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p> <p>② (생략)</p>	<p>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이하 이 조에서 “오염운송수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감염병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물건의 폐기 등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오염운송수단등에 접촉하거나 탑승할 수 없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1.3.5]</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p> <p>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걸린 환자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발견하였거나,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p> <p><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p>	<p>제20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p> <p>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다음 각 호를 발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2.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의사환자 3.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4.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운송수단 <p>[개정 : 2020.3.4, 시행 : 2021.3.5]</p>
<p>제22조(검역증)</p> <p>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운송수단, 사람 또는 화물에 이상이 없으면 운송수단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p>	<p>제22조(검역증)</p> <p>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출입국자, 운송수단 또는 화물에 의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출입국자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1.3.5]</p>
<p>제23조(조건부 검역증)</p> <p>①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검역소독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의 장에게 조건부 검역증을 내줄 수 있다.</p> <p>② 검역소장은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운송수단의 장으로부터 조건부 검역증을 돌려받고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후단 신설></p> <p>③ (생략)</p> <p>④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밝히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항시키거나 다른 검역구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p>	<p>제23조(조건부 검역증)</p> <p>①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검역소독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운송수단의 장에게 조건부 검역증을 내줄 수 있다.</p> <p>② 검역소장은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의 장은 종전에 발급받은 조건부 검역증을 폐기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밝히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1.3.5]</p>

<p>제24조(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p> <p>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p> <p><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p>	<p>제24조(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p> <p>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역감염병 환자등 2. 검역감염병 접촉자 3.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4.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p>[개정 : 2020.3.4, 시행 : 2021.3.5]</p>
<p>제25조(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p> <p>①·② (생략)</p> <p>③ 운송수단의 운행 중 발생한 사망자의 시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25조(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운송수단의 운행 중 발생한 시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p> <p>④ 검역소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시체의 사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의 경우에는 검사를 위해 해부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준용하며,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소장”으로 본다.</p> <p>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사망한 경우나 사망 후 사망한 사람이 검역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검역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준용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소장”으로 본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1.3.5]</p>
<p>제26조(공중보건조치)</p> <p>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행지역과 시기에 관한 정보의 요구 2. 검역감염병 관련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의 요구 3.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요구 4.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 	<p>제26조(공중보건조치)</p> <p><삭 제></p> <p>[개정 : 2020.3.4, 시행 : 2021.3.5]</p>
<p>제27조(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등의 발급 등)</p> <p>① 검역소장은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에 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이 의심되거나</p>	<p>제27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등)</p> <p>① 검역소장은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의</p>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의심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을 하게 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한 후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내준다.

-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의심이 없고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내준다.
- ③ (생략)
- ④ 검역소장은 선박이 선적지(船籍地)로 돌아가거나 제12조와 제15조에 따른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⑤ (생략)
- ⑥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와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신청 절차 및 발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심이 없고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내준다.

-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의심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을 하게 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한 후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내준다.
- ③ (현행과 같음)
- ④ 검역소장은 선박이 선적지(船籍地)로 돌아가거나 제12조와 제15조에 따른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⑤ (현행과 같음)
- ⑥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와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신청 절차와 발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2020.3.4, 시행 : 2021.3.5]

제28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 ①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가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驅除證明書) 발급을 신청하면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 등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조치를 하고 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② 검역소장은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그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1.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서 : 검역감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 2. 물품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증명서 :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세균검사 실시
- ③ 검역소장은 승객 및 승무원 등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그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1.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 예방접종 실시
 - 2. 세균혈청학적 검사증명서 : 검역감염병 감염 여부와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 실시
- ④·⑤ (생략)

제28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 ①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驅除證明書) 발급을 신청하면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송수단의 감염병 매개체 구제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② 검역소장은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그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거나 하였는지 확인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1.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확인서: 검역감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 2. 물품에 대한 병원체 검사증명서: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세균·바이러스 검사 실시
- ③ 검역소장은 승객 및 승무원 등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검역감염병 감염 여부와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삭제>
- <삭제>
- [개정 : 2020.3.4, 시행 : 2021.3.5]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소에서 제28조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어렵거나 주민이 검역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2.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최근 3년간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적이 없는 경우
 - 2. 검역감염병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28조의2(국제공인예방접종)

- ① 질병관리청장은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②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비하여 관련 응급처치 비상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③ 제28조의3의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의 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수행한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증명서의 사실을 확인한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상반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및 신설 : 2020.3.4, 시행 : 2021.3.5]

제28조의3(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2.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②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최근 3년간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적이 없는 경우
 - 2. 검역감염병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 2020.3.4, 시행 : 2021.3.5]</p>
<p>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p> <p>①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역구역 내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p> <p>1.~8. (생략)</p> <p>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해당 사업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해당 사업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p>	<p>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p> <p>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구역 내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 대하여 보건위생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p> <p>1.~8. (현행과 같음)</p> <p>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1.3.5]</p>
<p>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을 신속히 발견하는 등 효율적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신설></p>	<p>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p> <p>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과 오염 우려가 있는 운송수단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효율적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질병관리청장은 검역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검역과 관련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여권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p>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및 신설 : 2020.3.4, 시행 : 2021.3.5]</p>

<p>제29조의3(신고의무)</p> <p>①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그 지역을 출발한 후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검역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의3(신고의무)</p> <p><삭 제></p> <p>[개정 : 2020.3.4, 시행 : 2021.3.5]</p>
<p>제29조의4(승객예약자료의 요청)</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운송수단을 운용하는 자(이하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운송인이 보유하고 있는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1.~3. (생략)</p> <p>4. 제26조에 따른 공중보건조치 업무</p> <p>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29조의4(승객예약자료의 요청)</p> <p>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운송수단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1.~3. (현행과 같음)</p> <p>4.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업무</p> <p>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1.3.5]</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29조의5(관계기관의 협조)</p> <p>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기록, 여행자 휴대품 신고내용 및 금융정보, 그 밖의 긴급하게 필요한 자료·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무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국토교통부장관 4. 금융위원회위원장 5. 관세청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p><신 설></p>	<p>제29조의5(관계기관의 협조)</p> <p>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기록, 여행자 휴대품 신고내용 및 금융정보, 그 밖의 긴급하게 필요한 자료·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교부장관 2. 법무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국토교통부장관 5. 금융위원회위원장 6. 관세청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p>[개정 및 신설 : 2020.3.4, 시행 : 2021.3.5]</p>
<p>제29조의6(안내·교육)</p> <p>①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등의 시설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 및 제5조의2의 오염인근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p>	<p>제29조의6(안내·교육)</p> <p>①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등의 시설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리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p>

<p>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p> <p>② 검역소장은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 및 제5조의2의 오염 인근지역에 대한 안내와 검역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운송인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운송인에게 실시할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p>	<p>② 검역소장은 검역관리지역등에 대한 안내와 검역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실시할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영상물 등 시각적인 매체의 형태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역관리지역등의 위치 2. 검역관리지역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그 위험성 및 예방방법 3.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4. 건강 상태 신고 및 발열여부 검사에 관한 사항 5. 제12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내 및 교육을 요청하는 사항 <p>[개정 : 2020.3.4, 시행 : 2021.3.5]</p>
<p><신 설></p>	<p>제29조의7(검역소의 설치)</p> <p>①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국경에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p> <p>②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운영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 2020.3.4, 시행 : 2021.3.5]</p>
<p><신 설></p>	<p>제29조의8(검역소의 기능 및 업무)</p> <p>검역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국외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검역 2. 입국자 중 감염병 증상이 있는 자의 역학조사 3. 검역감염병 환자등 및 검역감염병 접촉자의 격리, 진단검사 4.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5. 검역감염병의 예방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검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p>[본조신설 : 2020.3.4, 시행 : 2021.3.5]</p>
<p><신 설></p>	<p>제29조의9(검역소 시설·장비 등)</p> <p>검역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p> <p>[본조신설 : 2020.3.4, 시행 : 2021.3.5]</p>

<p>제30조(검역공무원)</p> <p>① 이 법에 규정된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30조(검역공무원)</p> <p>① 이 법에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및 신설 : 2020.3.4, 시행 : 2021.3.5]</p>
<p>제31조(검역공무원의 권한)</p> <p>검역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대상이 되는 운송수단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31조(검역공무원의 권한)</p> <p>① 검역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대상이 되는 운송수단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운송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조사할 수 있다.</p> <p>② 검역공무원은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1.3.5]</p>
<p>제33조(검역공무원의 제복 등)</p> <p>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33조(검역공무원의 제복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복제(服制) 및 증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1.3.5]</p>
<p>제34조(수수료의 징수)</p> <p>①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승객·승무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1.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p> <p><신 설></p> <p>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p>	<p>제34조(수수료의 징수)</p> <p>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승객·승무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1.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p> <p>1의2.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p> <p>2.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p> <p>[개정 및 신설 : 2020.3.4, 시행 : 2021.3.5]</p>
<p>제38조(비밀누설 금지)</p> <p>검역조사 등 검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 제26조에 따른 공중보건조치,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 및 제29조의5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서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8조(비밀누설 금지)</p> <p>검역조사 등 검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 제12조의2에 따른 조치, 제12조의3에 따른 항공기 검역조사, 제12조의4에 따른 선박 검역조사, 제12조의5에 따른 육로에서의 검역조사,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 및 제29조의5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1.3.5]</p>

제39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운송수단의 장, 사람,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생략)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생략)
 5. 제38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실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4항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회항 또는 이동** 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3. 제18조를 위반하여 **격리병동**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화물**을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자
 4. (생략)

제39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사람,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현행과 같음)
 5. 제38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실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4항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동** 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3. 제18조를 위반하여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을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자
 4. (현행과 같음)

[개정 : 2020.3.4, 시행 : 2021.3.5]

제41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의3**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운송수단의 장**
 2. 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한** 운송수단의 장

<신 설>

 - 3.·4. (생략)
 5. **제26조에 따른 공중보건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6.·7. (생략)
- ③ (생략)

제41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2. 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운송수단의 장
 - 2의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4. (현행과 같음)

<삭 제>

 - 6.·7.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개정 : 2020.3.4, 시행 : 2021.3.5]

혈액관리법

<p>제4조(헌혈 권장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개정 : 2020.12.29, 시행 : 2021.6.30]</p>
<p>제4조의2(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p> <p>① 헌혈자는 송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로서 헌혈을 하는 현장에서 존중받아야 한다.</p> <p>② 헌혈자는 안전한 혈액의 채혈 및 공급을 위하여 신상(身上) 및 병력(病歷)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할 때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하여야 한다.</p>	<p>제4조의2(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p> <p>①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이하 “국가헌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국가헌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2.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 장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국가헌혈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20.12.29, 시행 : 2021.6.30]</p>
<p>제4조의3(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헌혈 증진과 혈액관리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혈액관리에 관한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수혈의 안전성 향상 방안 4. 혈액제제의 안전성 향상, 안정적 수급 및 적정한 사용 방안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4조의3(헌혈 권장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20.12.29, 시행 : 2021.6.30]</p>
<p>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p> <p>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p>	<p>제4조의4(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p> <p>① 헌혈자는 송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로서 헌혈을 하는 현장에서 존중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헌혈자는 안전한 혈액의 채혈 및 공급을 위하여 신상(身上) 및 병력(病歷)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할 때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하여야 한다.</p> <p>④ 혈액원은 헌혈자가 자유의사로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에 관한 유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헌혈자로부터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⑤ 헌혈 적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문진(問診) 사항의 기록과 면담은 헌혈자의 개인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서 하여야 한다.</p> <p>⑥ 혈액원은 채혈부작용의 발생 여부를 세심히 관찰하여야 하며, 채혈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⑦ 헌혈자에게 채혈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혈액원은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헌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20.12.29, 시행 : 2021.6.30]</p>
<p><신 설></p>	<p>제4조의5(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헌혈 증진과 혈액관리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혈액관리에 관한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수혈의 안전성 향상 방안 4. 혈액제제의 안전성 향상, 안정적 수급 및 적절한 사용 방안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본조신설 : 2020.12.29, 시행 : 2021.6.30]</p>
<p><신 설></p>	<p>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 구성)</p> <p>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p>

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현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현혈추진협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 2020.12.29, 시행 : 2021.6.30]

국민건강보험법

<p>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p> <p>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후단 신설></p> <p>② (생략)</p> <p>③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p> <p>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12.29, 시행 : 2021.6.30]</p>
<p><신설></p>	<p>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p> <p>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 2020.12.29, 시행 : 2021.6.30]</p>
<p>제49조(요양비)</p> <p>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49조(요양비)</p> <p>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p> <p>② 준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요양기관은 요양을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준요양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신 설></p>	<p>④ 제3항에 따른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지급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및 신설 : 2020.12.29, 시행 : 2021.6.30]</p>
<p>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p> <p>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보험급여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및 신설 : 2020.12.29, 시행 : 2021.6.30]</p>
<p>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p> <p>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p> <p>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p> <p>④·⑤ (생 략)</p>	<p>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p> <p>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p> <p>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4.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약국</p> <p>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 또는 준요양기관이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의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p> <p>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 및 신설 : 2020.12.29, 시행 : 2021.6.30]</p>
<p>제96조의3(서류의 보존)</p> <p>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p> <p>① 공단은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p>

<p>② 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p> <p><신 설></p>	<p>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개정 및 신설 : 2020.12.29, 시행 : 2021.6.30]</p>
<p><신 설></p>	<p>제96조의4(서류의 보존)</p> <p>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② 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를 청구한 준요양기관은 요양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p> <p>④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 2020.12.29, 시행 : 2021.6.30]</p>
<p>제99조(과징금)</p> <p>① (생 략)</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진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약제가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2항 진단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p>제99조(과징금)</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진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약제가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2항 진단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p>바에 따라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④~⑦ (생 략)</p> <p>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p> <p>⑨ (생 략)</p>	<p>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5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p>④~⑦ (현행과 같음)</p> <p>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p> <p>[개정 : 2021.6.8, 시행 : 2021.12.9]</p> <p>⑨ (현행과 같음)</p>
<p>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p> <p>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③ (생 략)</p>	<p>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p> <p>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p>[개정 : 2020.12.29, 시행 : 2021.6.30]</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15조(벌칙)</p> <p>①·② (생 략)</p> <p>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삭제 	<p>제115조(벌칙)</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9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신 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2.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5. 삭제

[개정 및 신설 : 2020.12.29, 시행 : 2021.6.30]